



# 일본의 수입육 원산지 표시 관리방법

## 1. 원산지 표시 도입경과

연도	법령	내용
1995. 5	-	청과물 원산지 표시제 검토着手 (식품표시문제간담회 - 식품유통국장 자문기구)
1995. 11	-	원산지 표시제 도입방향 결정
1996. 9	품질표시기준제정	야채 5품목(브로ccoli, 토란, 미늘, 생강, 표고버섯) 실시
1998. 4		야채 4품목(우엉, 아스파라거스, 원두, 양파) 추가 실시
1999	JAS법 제정	모든 신선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화
2000. 3	신선식품 품질표시기준 (농림수산성고시 제정)	7월부터 모든 신선식품(농축산물)에 적용 ※ 2001년 4월 1일부터 가공식품에 적용
2002	JAS법 개정	표시위반에 의한 패널티 강화 - 위반 사업자명 등 신속한 발표 - 별칙의 대폭 강화

## 2. 표시 의무자 : 판매업자(소매판매업자, 기타 판매업자)

## 3. 표시기준

구분	수입산	국내산
축산물	“원산국명”을 기재	“국산”, 다만 도도부현명 또는 시정촌명, 기타 일반적으로 알려진 지명을 원산지로 기재 가능
가공품	제조업자를 수입자로 “원산국명”을 기재	명칭, 원재료명, 내용량, 소비기간, 보존방법, 제조업자 등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를 기재함.
농산물	“원산국명”을 기재 (알려진 지명기재 가능)	“국산”, 다만 시정촌명을 원산지로 기재 가능
수산물	“원산국명”을 기재	생산된 “수역명” 또는 “지역명(양식장이 속한 도도부현명)”, 다만 수역명을 기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어획한 항구명 또는 항구가 속한 도도부현명을 기재

### ○ 수입육 원산지 표시(닭고기 예)

- 수입 닭고기는 유통업자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단계까지 모든 단계에서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해외에서 닭고기를 수입하는 수입업자도 표시의무가 있다. 표시방법은 「한국산 닭고기」, 「닭고기(미국)」 등을 들 수 있다.
- 표시방법은 품명의 표시와 동일한 시야에 들어오는 장소에 정식명칭 또는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약칭을 사용하여 표시한다. 만일 원산지 국명을 부당표시할 경우 경품표시법 위반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도 해당한다(생체로 수입해서 1개월 이내에 도축하는 경우 수입 닭고기로 취급하여 원산국명 표시가 필요하다).
- 여러 원산지를 혼합할 경우 중량이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원산지를 기재한다.
- 여러 가지 종류의 식육을 혼합한 가공품의 경우 JAS법상 원산지 표시는 불필요하지만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식육공정경쟁규약에는 단품목 분쇄육과 동급 취급하여 원산지 표시가 필요함.

## 4. 표시 의무자 : 판매업자(소매판매업자, 기타판매업자)

### 1) 표시방법

- 소매판매업자 이외의 판매업자는 용기나 포장이 잘 보이는 곳이나 송장 또는 납품서 등에, 소매판매업자는 용기나 포장이 잘 보이는 곳 또는 제품에 가까운 알아보기 쉬운 장소 등에 표시
- 용기나 포장에 인쇄, 표시할 경우 8 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로 표시

### 2)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 당해 판매업자에 대한 표시사항을 표시 또는 준수사항을 준수할 것을 지시
- 위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판매자의 이름을 공표
- 공표된 뒤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
-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50만엔 이하(법인)의 벌금의 처함.

※ 2002년 JAS법 개정에 의한 표시위반에 대한 패널티 강화

구 분	벌 칙
개 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법 인	1억엔 이하의 벌금

## 5. 원산지 표시 단속을 위한 감시체계

### 1) 농림수산성(2003년 7월 1일)

- 종합식료국, 식량청 및 수산청에 분리되어 있던 식품표시 감시를 일원화 → 소비안전국(신설)
- 지방 농정국 및 농정사무소에 규격과를 설치 → 약 2,000명 감시업무 전임



- 2003년도 감시지도(17,886점 - 명칭누락 540점(30%), 원산지 누락 1,285(7.4%)
  - 농림수산소비기술센터 → 식품의 과학적 분석을 담당
- 2) 신규 감시체계의 단속강화 내용
- 소매 및 도매점포에서의 원산지 등의 품질표시가 적정유무
  - 원산지 표시 등의 유무에 대한 추적 조사 :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특정 식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해서 소매단계에서 제조업자까지 추적 조사함.

## 6. 원산지 표시 단속결과(쇠고기, 2004. 1~3월)

- 1) 단속주체 : 농림수산성
- 2) 쇠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

연도	조사업체 (품목)	단속결과(건)		
		부정표시	명칭누락	원산지 누락
2003년	1,3000,679	-	1,660	17,1736
2004년 (1~3월)	70,153 (3,953)	14 (7)	-	-

## 7. 대표적인 원산지 부정표시(둔갑 판매) 사례

- 1) 2002년 일본 설인식품 및 일본식품 등
  - 2002년 8월 정부가 광우병 대책으로 실시한 국내산 쇠고기 수매제도를 악용하여 외국산 쇠고기 520kg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중 적발
- 2)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여 적발

## 8. 수입 식품에 대한 일본 소비자의 의식조사(2003, 2,300여 세대 대상)

- 1) 소비자의 수입 및 국내산 식육 표시 방법
    - 수입식육과 국내산 표시(98.3%)
    - 식육의 원산국(지) 표시(93.3%)
    - 부위별 표시(90.3%)
    - 국내산 식육의 산지 브랜드명 표시(78.5%)
    - 화우 및 젖소를 구분하여 표시(76.2%)
    - 용도 표시(48.3%)
- ※ 원산지 표시에 대한 희망이 모든 항목에서 높았지만, 특히 수입육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요구는 가장 높게 나타났음.

### 2) 수입육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인지도

- 수입 식육에 대한 원산국(지)명을 표시하는 규정은 「식육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 규약(1996)」에 규정되어 있음.
- 소비자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인지도는 「알고 있다」 68.3%, 「알지 못하였다」 30.6%를 차지하였음.

### 3) 수입육 닭고기 구입의사

구분	자주 구입하고 있음	가끔 구입함	별로 구입하지 않음
응답자 (비율)	235 (10.2)	501 (21.8)	1,564 (62.8)

### 4)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한 이유

구분	응답자	비율
① 기준 이상의 농약잔류가 있지 않을까	1,088	47.3
② 일본에서 사용하지 않는 식품첨가물을 쓰지 않는가	614	26.7
③ 유전자 변형물질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253	11.0
④ 표시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것 같아서	138	6.0
⑤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을까	58	2.5
⑥ 기타(개인적인 사정 등)	150	6.5

### 5) 수입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

설문지 질의 내용	응답비율		
	그렇다	그렇지 않다	기타
① 수입식품이 국내산 보다 가격이 싸다.	85.6	6.6	7.8
② 수입식품의 맛이 국내산에 떨어지지 않는다.	17.9	47.7	34.4
③ 수입식품의 품질이 국내산에 떨어지지 않는다.	13.8	48.6	37.6
④ 수입식품의 안정성이 국내산에 떨어지지 않는다.	3.2	72.3	24.5
⑤ 수입식품이 앞으로 증가할 것인가?	58.4	14.7	26.9

### 6) 일본 소비자의 식품표시에 대한 불만과 불신 정도

구분(불만내용)	비율(%)	
	불만	만족
① 날짜표시(유통기간, 품질보존기간)의 활자크기	61.9	38.1
② 원산지 표시(국내산과 수입품 구분)	29.4	70.6

※ 자료 : 식품의 표시문제와 소비자의 구매활동(일본, 국민생활센터, 2003)

- 출처 : 수입 축산물 유통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2004